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공개
-연수구체육회-

청렴  연수구

연 수 구
감 사 실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감사대상 : 연수구체육회

감사기간 및 감사범위

대 상 기 관	감 사 기 간	감 사 범 위
연수구체육회	2022. 8. 1. ~ 8. 10. (10일)	2020. 1. 1. ~ 2022. 6. 30. 추진업무 전반

감 사 반 : 감사반장 등 8명

중점 감사사항

- 주요사업 전반
- 급여, 예산, 회계 처리 사항 전반
- 시설운영 전반
- 조직 및 인사운영(채용 등)의 적정 및 효율적인 운영 여부
- 복무관리 사항 전반

감 사 성 과

총 지적 건수 : 20건 처분

- (행정상 조치) 20건(주의 8건, 시정 10건, 개선 1건, 권고 1건)
 - ※ 기관장경고 2건
- (재정상 조치) 4,671,300원
- (신분상 조치) 없음

총 평

- 이번 감사는 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신뢰 받는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자 보조금 지원단체인 연수구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임.
- 2022. 8. 1. ~ 8. 10.까지 총 10일 동안 서면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연수구체육회 15건, 문화체육과 5건 총 20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이중 기관장경고 2건, 약 4백6십7만원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법인의 운영재산 관리 부실 ▲회장의 업무추진비 남용 및 공용차량 사적사용 ▲기간제근로자 비효율적 운영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소홀 ▲자부담 집행 관리 및 보조금 지출증빙 소홀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로서 관행적 병폐를 보여줌.
- 연수구체육회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체육회 회원단체장 간담회 및 업무 회의 명목으로 공휴일과 주류판매 업소에서 사용하거나, 체육회장 개인 식사, 체육회 임원 개업식 축하, 공식적인 업무와 무관한 사용 등 총 50건, 3백5십여만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15건, 92만원을 환수 조치하였음.
- 특히 직무관련성 입증 없이 관외지역(계양구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총33차례, 2백5십여만원을 사용하고 약30km 떨어진 관외지역에 위치한 가족사업장에 공용차량으로 이동하여 업무추진비로 직원 간식을 구입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확인하였음. 이에 구민의 혈세로 마련한 보조금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체육회장에 대하여 기관장경고 조치함.
- 체육회는 2021년 6월 특수민간법인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재산 확보가 필수이나 임원회비 2천4백만원이 미납되었으며, 자체내규에 규정하고 있는 회비 미납에 따른 후속조치(해촉)도 이행하지 않아 운영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구와 사전협의 없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보조사업을 무단으로 수행하지 않거나,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임에도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과는 민선 체육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명확한 근거 없이 지원하였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소홀과 2020년 신규 지원사업에 대하여 후원금(자부담) 규모, 사업간 중복·유사성, 지난 성과 등 면밀한 검토없이 보조금을 과다하게 증액하여 지원함으로써 투명하지 못한 보조사업 운영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
- 향후 문화체육과에서는 연수구체육회 대상 불필요한 운영비 지원과 보조사업은 과감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밀한 보조금 정산이 필요함.

컨설팅감사

< 개선 목표 >

- 민선체육회 투명한 운영
- 위법·부당 보조금 집행 근절
- 책임감 있는 보조사업 수행
- 재정자립도 제고

	개 선 과 제	개 선 방 향
1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① 체육회 회비·후원금 사용내역 공표 ②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표 ③ 공용차량 사적 사용금지 자체내규 명문화
2	중복사업 및 예산낭비	① 민선 체육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재검토 ② 협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지원 재검토 ③ 업무량에 따른 사무국 인력(기간제근로자) 규모 재산정
3	위법·부당한 보조사업 운영	① 체육회 회원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운영 정기교육 의무화 ②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액 환수 철저 ③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철저
4	지나친 재정의존도	① 자체수입(회비·기부금·후원금·수익금·보조금) 구조 확립 ② 체육발전기금 운용 및 수익사업 개발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연수구체육회-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 문화체육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금 액
1	연수구체육회 운영재산 확보에 관한 사항	시정	
2	연수구체육회 업무추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시정(회수)	924,500원
3	연수구체육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시정	
4	지방보조금 정산관리 소홀	시정(감액·회수)	3,688,000원
5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권고	

□ 연수구체육회

일련 번호	제 목	처분요구	금 액
1	운영재산(임원의 회비) 확보에 대한 운영 부실	시정	
2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기관장경고)	시정(반납)	924,500원
3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기관장경고)	주의	
4	사무국장 정근수당가산금 비과세 처리	시정(추징)	8,800원
5	채용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항	주의(기관)	
6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7	소속공무원에 대한 면접수당 지급	시정(회수)	50,000원
8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지출증빙 누락 등) 부적정	주의(기관)	
9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주의(기관)	
10	보조사업 자기부담금 비율 부적정	주의(기관)	
11	보조사업 자기부담금 비용 집행 위반	시정(감액)	2,588,000원
12	기준단가 미준수	주의(기관)	
13	보조금 집행 부적정	주의(기관)	
14	보조사업 수행·관리 소홀	시정(반납)	1,100,000원
15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미준수	주의(기관)	

2022년 연수구 특정감사 결과
-연수구체육회-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대 상	연수구체육회(문화체육과)	일련번호	1(1)
제 목	연수구체육회 운영재산 확보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시정요구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연수구체육회(이하 "체육회" 라고함)는 법인 이전에 임의단체로서 연수구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던 단체이기에 법인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은 없으며 보조금 외에 법인재산은 회원단체 및 임원의 회비로 구성된 운영재산이 전부라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이 감소하거나 없을 때에는 법인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이후에도 운영재산 중 일부를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법인의 설립허가 조건이었던 「인천광역시 연수구체육회 정관」 제41조(재원)에 따르면 "회원단체 및 임원의 회비에 대한 재원확보에 있어 「임원회비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정기총회(2022.2.23.)이후 3개월 이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해촉을 사전통지하고 총회에서 해임 안을 의결한 후 연수구청에 보고하여야 함"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총 19명의 임원이 회비 24,250,000원을 미납하였고, 정기총회(2022.2.23.) 3개월이 지났음에도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의 설립조건과 운영기반이라 할 수 있는 운영재산 확보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체육회)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재산(임원회비) 미납금 24,250,000원 징수, 기한 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 지체 없이 해촉 절차 이행 요구(시정) ○ (문화체육과) 연수구체육회 임원회비 징수 및 후속절차(해촉)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처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제한, 법인허가 취소 등 필요조치 강구(시정) 		

대 상	연수구체육회(문화체육과)	일련번호	2(2)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시정요구 (기관장경고)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기관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2021년1월부터 2022년6월까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증빙자료와 불일치 하거나 관외 사용 등 총 50건(3,598,400원)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부적정 하게 사용하였다. 이 중 15건(924,500원)은 주류판매업종에서 사용하거나, 공휴일에 사용, 사적 용도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하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체육회 「임원회비 운영규정」에 회비 용도로 회장의 판공비가 이미 규정되어 있으며, 민간법인 회장의 업무추진비 지원근거가 명확히 규정 되어 있지 않고 사회통념적으로 민간법인 회장의 업무추진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해야할 만큼 특별히 필요한 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체육회) 업무추진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 924,500원을 반납하고 연수구체육회 회장에게 경고 조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요구 (시정)(기관장경고) ○ (문화체육과) 연수구체육회 회장 업무추진비 지원의 필요성, 적격성,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지원 재검토(시정) 		

대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3
제목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주의요구 (기관장경고)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7조에 따르면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하고,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울러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차량관리부서 및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서, 차량배차승인서, 차량유류수불부,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체육회 공용차량 운행기록상 회장 개인사무실, 식당 등 사적으로 공용차량을 사용한 경우, 공용차량의 사용 목적 및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등 총 204건(스타렉스 140건, 카니발 64건)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다. ○ 또한 차량운행일지에 같은 시간대 2대의 공용차량에 동일한 운전자가 중복되어 작성되어 있는 경우 7건 등 차량 운영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공용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부당 지시한 연수구체육회 회장에게 경고 조치(기관장경고)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4
제 목	사무국장 정근수당가산금 비과세 처리	처분요구	시정요구 (추징)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어느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수당으로써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직원A에게 2022년 1월과 2월에 지급한 정근수당가산금에 대하여 과세 없이 지급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처분내용	○ 누락된 2022년 1월, 2월 직원A의 정근수당가산금 과세분 8,800원 추징(시정)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5
제 목	채용절차 미준수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회장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종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 제출절차 및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계산은「민법」제157조의 규정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고 공고일 다음부터 기산해야 한다. ○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2022년 4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 시 공고기간을 9일로 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2022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평정표는 현장에서 심사위원이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하나, 연수구체육회는 2022년 1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면접위원 ○○○의 면접전형 평정표의 심사위원 성명 및 서명을 누락하여 채용 과정에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처분내용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		

대 상	연수구체육회(문화체육과)	일련번호	6(3)
제 목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개선요구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연수구체육회 운영보조금 지원계획」 [문화체육과-32830(2021.12.29.)]에 따르면 연수구 체육회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체육회 법인전환에 따른 자체 신규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신규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채용공고 전 채용계획에 대하여 필시 문화체육과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채용계획 수립 시 계획서에는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연수구체육회에서 제출한 채용계획서에는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차 채용계획서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담당업무를 기재해 놓았으나, 2차 채용계획서의 경우 담당업무를 불분명하게 기재해 놓아 채용목적이나 채용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문화체육과에서는 해당 계획서를 승인하였다. ○ 또한 기간제근로자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2022년 2월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업무내역을 살펴본 바, 직원A의 경우 업무분장에 없는 사무국 운영비 관리업무가 주요업무로 파악되었고 그 외 업무분장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의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행정일지대장상 대부분의 근무일에는 '사무국 행정업무 및 담당업무'로 행정일지대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확한 업무 수행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 마찬가지로 직원B의 경우에도 체육회 행정업무라 보기 힘든 '대한체육회 인재개발원 기공식 수행업무', '업무회의 및 자문위원 간담회 참석관련 차량 운행', '국회의사당 체육위원회 간담회 참석 수행' 등 연수구체육회장 수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의 근무일에는 행정업무일지에 '사무국 행정업무 및 담당업무'로 업무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확한 업무수행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 특히 직원B의 경우 행정업무 인력으로 채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분장에 존재하지 않는 체육회장 수행업무를 하고 있는 등 당초 체육회 행정업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보았을 때, 실제 필요인력 보다 과다하게 인력을 책정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체육회) 현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개선) ○ (문화체육과) 채용계획서 사전검토 철저, 적정규모의 인건비 지원(시정)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7
제 목	소속공무원에 대한 면접수당 지급	처분요구	시정요구 (회수)
지적내용	<p>○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3. 운영수당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p> <p>○ 그러나 연수구체육회는 20XX. XX. XX. 생활체육지도자 선발에 따른 면접시험 시 체육회 업무를 담당하는 ○○○ 주무관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고 면접수당 5만원을 지급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p>		
처분내용	<p>○ (연수구체육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소속공무원에게 지급된 면접수당 50,000원에 대하여 회수(시정)</p>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8
제 목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지출증빙 누락 등)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p>○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1항에 따르면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 그리고 「연수구청장배(기) 및 협회장배(기) 보조금 집행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구비요령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결제 : 견적서+카드매출전표+거래명세표(영수증)+사진첨부 - 계좌이체(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사전승인 및 사유서 작성 필수) : 사유서+견적서+계좌입금내역서+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사진첨부 <p>○ 그러나 연수구체육회는 “□□□□ 및 △△△△비용”, “제○회 ♣♣♣♣배 ○○대회”, “제☆회 ■■■■기 전국 ◆◆대회”, “제▲회 ◇◇◇◇기 전국 ★★대회”와 관련하여 계좌이체 건에 대한 지출증빙을 소홀히 하였다.</p>		
처분내용	<p>○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p>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9
제 목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관리를 목적으로 예산집행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이하 '체육회' 라고 함)에서는 <20xx년 제□회 △△△△배 ○○대회> 추진 시 보조금 4,167,000원 중 2,800,000원(보조금의 약67%)을 ◆◆◆ 제작비로 사용하며 타종목 대회 홍보비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하였으며, 20xx년, 20xx년 △△△△배 ○○대회 홍보를 위하여 ◆◆◆ 제작비로 20xx년 2,600,000원, 20xx년 3,000,000원을 집행하였으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어 예산이 사장되었다. ○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한 「연수구청장배(기) 및 협회장배 보조금 집행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의 집행 시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해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 ♥♥를 <20xx년 제♣회 ♥♥♥♥배 ●●대회>에서는 각 38,500원, 1,100원에 대여하였으나, <20xx년 제□회 △△△△배 ○○대회>에서는 70,000원, 2,000원에 대여함으로써 동일품목단가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여 낭비를 초래하였다. ○ 또한 <제♣회 △△△△배 ★★대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xx. xx. xx.(수) 긴급하게 취소되었으나 행사개최일은 이틀 뒤인 20xx. xx. xx.(금)로 체육회가 가입한 스포츠주최자배상책임보험을 취소하면 가입비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코로나19로 인하여 20xx년, 20xx년 △△△△배 ○○대회, ▣▣대회, 20xx년 △△△△배 ◎◎의 경우 대회가 취소되었으나 사업량이 없음에도 그에 대한 보조금을 감액 조치하지 않고 집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처분내용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10
제 목	보조사업 자기부담금 비율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08호) 2020.3.30.시행」에 따르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의 제출 - (교부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 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 기간,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 (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p> <p>○ 「연수구청장배(기) 및 협회장배(기) 보조금 집행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 대회 30일 전까지 연수구체육회로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세부지출계획서, 대회식순, 상장수여자(공적조서), 청렴서약서(연수구체육회, 종목단체) 원본, 통장사본(보조금 및 자부담) - 계획서 작성 시 준수사항 - 자부담률 20% 이상 편성(총사업비 대비) ▷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으로 규정되어 있다.</p> <p>○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연수구청장배(기) 및 협회장배(기) 보조금 집행 및 평가 기준」에 따라 종목별 협회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보조금 80%, 자부담 20%을 준수하여야 하나, <20xx년 제◇회 ☆☆☆☆배 ○○대회>, <20xx년 제◆회 ★★★★★기 △△대회>는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지 않고 낮추어 부적정하게 신청·교부한 사실이 있다.</p>		
처분내용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11
제 목	보조사업 자부담 비용의 집행 위반	처분요구	시정요구 (감액)
지적내용	<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호) 2021.9.6.시행」 제15조에 따르면,</p> <p>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p> <p>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이 당초 사업 계획보다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p> <p>으로 규정되어 있다.</p> <p>○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코로나19로 취소된 <20xx년, 20xx년 ○○○○배 ◇◇대회>, <20xx년, 20xx년 ○○○○배 ■■대회>, <20xx년 ○○○○배 △△대회>의 경우 대회 개최를 준비하며 기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자부담과 보조금을 비율대로 나누어 정산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잔액만 반납하여 자부담 비용의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취소되지 않은 <20xx년 제♣회 ○○○○배 ♠♠대회>의 경우 보조금은 당초 집행계획에 따라 전액 집행하였으나 자부담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하였다.</p>		
처분내용	<p>○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p> <p>○ 20xx년, 20xx년 코로나19 대회가 취소되어 보조금만 집행한 4개 종목대회에 대하여 총집행액 기준으로 당초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따라 재정산, 재정산 결과 발생한 반환금 2,588,000원은 2022년 종목별 대회 지원 보조금에서 감액 조치(시정요구)</p>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12
제 목	기준단가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p>○ 「연수구청장배(기) 및 협회장배(기) 보조금 집행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인쇄물, 상패, 현수막, 심판실비(인건비), 식비 등 대회진행 공통사항의 경우 기준금액에 따라 집행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심판 및 진행요원) 사유 근거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심판수당 기준금액을 1인 1일 70,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20xx년 제△회 □□□□배 ●●대회>, <20xx년 제◆회 □□□□배 ▲▲대회> 심판수당으로 별도의 근거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100,000원을 집행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다.</p>		
처분내용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13
제 목	보조금 집행 부적정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하생략)..... 등”이라고 제시하고 있다.</p> <p>○ 그러나 체육회에서는 “20xx년 제◆회 ☆☆☆☆기 ♣♣대회” 개최를 바로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어 보조금으로 구입한 부상품의 비용을 반납하거나 잔여 부상품을 차년도에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차년도에 개최한 “제◆회 ☆☆☆☆기 ♣♣대회” 사업비에 부상품 항목을 제외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부상품으로 3,558,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p> <p>○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xx년 제□회 ☆☆☆☆배 ♠♠대회”를 전면 취소하였음에도 보조금 집행을 중지하지 않고 20xx. xx. xx.자 취소결정 통지로부터 24일이 경과한 20xx. xx. xx.에 아래와 같이 ◎◎◎ 구입 명목으로 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출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p>		
처분내용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		

대 상	연수구체육회(문화체육과)	일련번호	14(4)
제 목	보조사업 수행·관리 소홀	처분요구	시정요구 (회수)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고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문화체육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회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집행한 보조금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전액반환 또는 총집행액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을 하여야 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 특히 <20xx ◆◆◆◆기 전국생활체육 △△대회> 참가 목적으로 교부 결정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연수구체육회 가맹단체인 연수구♣♣협회 담당자 부주의로 해당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였고 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이 마땅하나 연수구체육회 가맹단체인 연수구♣♣협회에서는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출 없이 선수단 구성의 어려움, 재정상 어려움 등 내부 사정만을 호소하는 사유서로 보조금 전액반환을 거부하였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를 승인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구체육회) 무단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은 관계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주의), 미반환금 1,100,000원을 반납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문화체육과)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연수구체육회로부터 미반환금 1,100,0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대 상	연수구체육회	일련번호	15
제 목	사업내용 변경 시 사전 승인 미준수	처분요구	주의요구
지적내용	<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V.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2]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법 제32조의4)에 따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당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은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이에 따라, 연수구체육회에서는 당초 보조금 교부 시 계획한 사업내용의 변경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간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 그러나 연수구체육회에서는 <20xx년 제○회 ◆◆◆◆기 전국 □□대회>, <20xx년 제●회 ◇◇◇◇기 전국 생활체육 ■■ 대회>, <20xx년 제△회 ♣♣♣♣기 생활체육 전국 시·도 대항 ♥♥대회> 총 3건의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자부담의 집행계획이 변경 또는 자부담과 보조금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였다.</p> <p>○ 또한 「전국 및 시·도대회 출전지원 보조금 집행 및 평가 기준」에 따르면 “식비의 경우 대회 지역 내 사용 및 대회 기간 중 사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회기간이 20xx년 xx월 xx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틀 전인 20xx년 xx월 xx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백반에서 대회에 사용할 도시락 300,000원을 주문하면서, 전국대회와는 무관한 식대 150,000원을 당일 자부담으로 별도로 집행하며 규정을 위반하였다.</p>		
처분내용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기관경고)		

대 상	문화체육과	일련번호	5
제 목	종목별 협회장배 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처분요구	권고사항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교부결정 및 교부전 사전 확인사항으로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문화체육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조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종합지원 계획」등 보조금 관계 규정과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수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생활체육 저변인 종목별 협회(연맹)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연수구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규사업으로 협회장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였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제3조제4항 “연수구체육회 회원단체와 관계되는 예산은 연수구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배 및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보조금 전체를 체육회로 교부하고 있으며, 두 대회의 운영단체, 대회방식, 참가자가 동일유사한 점을 고려하였을 경우 사업의 중복성, 적격성에 대하여 면밀한 실무 검토가 필요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 그리고 보조사업 재원구성도 “협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협회 및 연맹이 주최하고 각종 후원금을 통하여 자부담 확보가 수월함에도 자부담의 비율을 “구청장배(기) 생활체육대회”와 동일하게 20%이상으로 적용하여 투명하지 못한 보조사업 운영과 자부담 축소 등을 초래하였다. ○ 또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사업성과 측정이 어려웠음에도 “협회장배(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2020년 6천만원에서 2022년 1억2천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인천시 타 군구 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지원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처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와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간 중복성과 유사성, 지원의 적정성, 타 지자체 사례 등 고려하여 “협회장배 생활체육대회” 사업 재검토(권고) 		